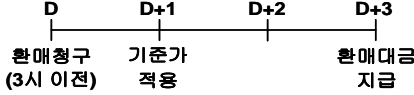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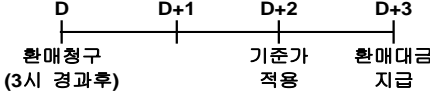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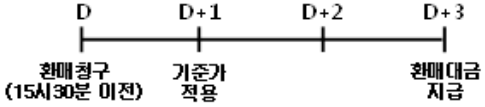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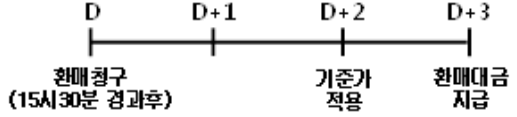


#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▣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(주식) 투자설명서 변경 전·후 비교표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<p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이익 배분</p>	<p>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 <p>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(이하 “상환금 등”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.</p>	<p>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(이하 “상환금 등”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.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(또는)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가. 매입</p>	<p>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·환매 기준시점 변경</p>	<p>(3)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15시 (오후 3시)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Timeline: D (자금납입 3시 이전) ————— D+1 (수익증권 매입 D+1 기준가 적용)</p> </div> <p>(나) 15시(오후 3시)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Timeline: D (자금납입 3시 경과후) ————— D+1 ————— D+2 (수익증권 매입 D+2 기준가 적용)</p> </div>	<p>(3)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15시 30분 (오후 3시30분)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Timeline: D (자금납입 15시30분 이전) ————— D+1 (수익증권 매입 D+1 기준가 적용)</p> </div> <p>(나) 15시 30분 (오후 3시30분)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Timeline: D (자금납입 15시30분 경과후) ————— D+1 ————— D+2 (수익증권 매입 D+2 기준가 적용)</p> </div>

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나. 환매</p>	<p>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. 환매 기준시점 변경</p>	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15시(오후 3시]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4 영업일(D+3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 <p>(나) 15시(오후 3시]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4 영업일(D+3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 <p>(4)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(정정)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(오후3시)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. 다만, 15시(오후3시)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.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</p> <p>6)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(15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	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15시30분 (오후 3시30분)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4 영업일(D+3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 <p>(나) 15시30분 (오후 3시30분)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해당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4 영업일(D+3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 <p>(4)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(정정)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 (오후 3시30분)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. 다만, 15시30분 (오후 3시30분)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.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</p> <p>(6)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(15시 30분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 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